■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제 품	제 품 명	
	용 도	
	사용원재료	
	제 품 규 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설명서 1부 나. 견본품 1개 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을 하는 경우 별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청 →	접 수 ▼ 심사·검토·시험결정 ▼ 등록 및 공고
← 통 보	